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-582호

-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-

공용·독립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공고

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열정과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(창업 7년 이내) 및 예비 창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25일
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
1. 공고 및 접수기간: 2026. 11. 25.(수) ~ 12. 14.(월) 18:00

2. 입주장소: 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(검단구 독정로 77, LH행복주택 37단지 1~2층)

3. 모집규모: 공유오피스 17석 및 독립오피스 8실(2인~4인)(중복지원 가능)

4. 지원내용

가. 창업교육, 컨설팅 등 입주기업 성장 지원

나. 임대료 무료(관리비는 입주공간별 실비 부담,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 개별 가입)

다. 사무공간, 공용OA, 카페테리아, 회의실 등 지원

5. 신청자격

가. 공유오피스(17석)

- 공고일 기준 검단구 거주 19 ~ 39세 청년(대표자 기준)
-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

나. 독립오피스(8실(2인실 4실, 3인실 2실, 4인실 2실))

- 공고일 기준 검단구 거주 19 ~ 39세 청년(대표자 기준)
-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팀
- 공고일 기준 대표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

* 예비창업팀의 경우 입주 후 30일 이내 직원 구성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

6.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 현황

	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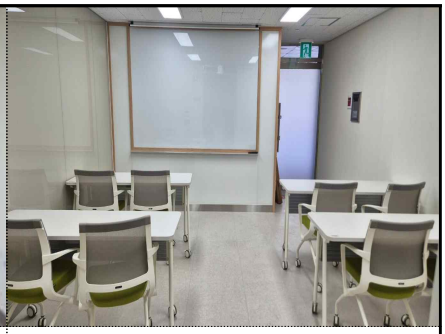
공유오피스	독립오피스	강의실
	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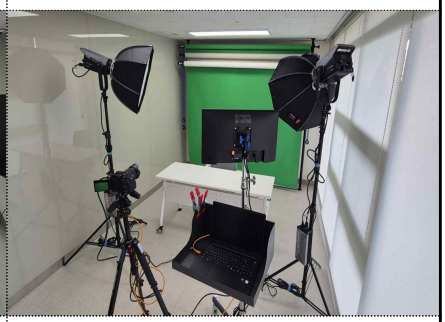
카페테리아	다목적룸	셀프스튜디오

7. 자격제한

가.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

나.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
다.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

라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

마. 관계 법령 및 건축물 용도상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·신고·등록이 제한되는 업종(개별확인 필수, 미확인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되며,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해당 책임 없음)

바. 관련 법령 위반, 신청서 허위 기재, 허위 서류 제출한 경우

8. 선정·평가 및 선발

* 심사일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가. 선정방법: 서면심사 ⇒ 대면(발표 및 질의응답) 심사

① 1차 서면심사

- 1차 합격자 발표: 합격자 개별 통보

② 2차 대면심사

- 심 사 일: 2026. 12. 28.(월) 14:00(예정)
- 심사장소: 검단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(인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)

*** 2차 대면심사 시 지표 항목별 배점의 60% 미만이거나 전체 합산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에서 제외**

나. 심사지표

① 공유오피스

: 창업자 역량 및 의지(30점), 시장성 및 성장가능성(30점), 공간사용(입주) 적합도(40점)

② 독립오피스

: 창업자 역량 및 의지(30점), 창업 아이템(30점), 사업성 및 시장성(30점), 입주 적합성 및 지역 기여(10점)

다. 참고사항

①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② 선정기업의 입주 포기 시 순위에 따라 예비기업 입주 가능

라. 합격자 발표: 2026. 12. 29.(화)(예정) /합격자 개별 통보 및 검단구 홈페이지 게시

9. 입주계약 및 입주

가. 입주기간: 1년(성과평가를 거쳐 1년씩 연장 가능, 최대 3년)

* 연 2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상황 점검 및 입주유지, 경고, 퇴거 등 조치 실행

나. 계약일: 2027. 1월 중

다. 사업자등록: 관외소재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장(본점) 주소를 본 센터로 이전 또는 등록하여야 함

라. 입주관리

- 시설 이용현황 점검, 미이용·규정 위반 시 경고, 퇴거 등 조치
- 1개월 이상 무단 미사용, 출근율 미달 또는 경고 2회 이상 등의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

10. 입주자 의무 사항: 아래 사항 미준수 시 강제 퇴거 조치

가. 입주계약서 및 입주기업 관리규정 준수

나.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 이행 철저

다. 시설물의 무단 변경 금지 및 파손 시 변상 책임

라.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보안, 위생,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(화재보험 가입 등)

11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가. 접수방법: 담당자 이메일 접수(tjdusdi94@korea.kr)

* 2026. 12. 14.(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하며, 접수 후 다음 날까지 접수 확인 회신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, 반드시 담당자(☎032-726-6752)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서류

-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
-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(해당자) 1부
- 최근 연도 재무제표(매출 입증)서류 또는 매입장부 1부(기창업자에 한함)
- 각종 국가 인증 증빙서류 또는 사업실적 및 활동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1부(해당자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직원 구성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독립오피스 신청자에 한함)
-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

※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* 접수서류 등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,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하며(수료증 및 위촉장 등 제외),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 내의 서류이어야 함.
*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*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각종 증명서 등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결과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까지 반환할 수 있음.

12. 참고사항

가.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를 경우 입주 승인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

나.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 확인 요망

다. 심사 평가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, 재공고를 실시하거나 입주계약 체결을 아니할 수 있음

라.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 변경 및 추가 안내 발생 시에는 검단구청 홈페이지 공지 또는 신청자 개별 통보

마.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
바.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귀속됨

13. 문의: 검단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(☎032-726-6752)